[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2010067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2.12.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4.06.04

http://www.hanscake.co.kr
quin1@hanmail.net

[한스(HANS)]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한스제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한스제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5차 비111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31-463-350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1-463-350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팀 031-463-3505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4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8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9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5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36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39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41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4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상호</th><th>사용 브랜드</th><th colspan="4">주 소</th></tr>
<tr><td rowspan="4">㈜한스
제과</td><td>한스(HANS)</td><td colspan="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5차 비111호</td></tr>
<tr><td>법인 설립등기일</td><td>사업자등록일</td><td>대표자</td><td>대표전화번호</td><td>대표팩스번호</td></tr>
<tr><td>2010.07.22</td><td>2010.08.01</td><td>안주태
외2인</td><td>031-463-3505</td><td>031-463-3506</td></tr>
<tr><td>법인등록번호</td><td>110111-4398883</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214-88-63183</td></tr>
</table>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관계</th><th>이름/상호</th><th>영업표지</th><th colspan="3">주 소</th></tr>
<tr><td rowspan="3">대표이사</td><td rowspan="3">안주태/
㈜한스제과</td><td rowspan="3">한스(HANS)</td><td colspan="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5차 비111호</td></tr>
<tr><td>대표자</td><td>대표전화번호</td><td>대표팩스번호</td></tr>
<tr><td>안주태 외2인</td><td>031-463-3505</td><td>031-463-3506</td></tr>
<tr><th>관계</th><th>이름/상호</th><th>영업표지</th><th colspan="3">주 소</th></tr>
<tr><td rowspan="3">대표이사</td><td rowspan="3">한성훈/
㈜한스제과</td><td rowspan="3">한스(HANS)</td><td colspan="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5차 비111호</td></tr>
<tr><td>대표자</td><td>대표전화번호</td><td>대표팩스번호</td></tr>
<tr><td>안주태 외2인</td><td>031-463-3505</td><td>031-463-3506</td></tr>
<tr><th>관계</th><th>이름/상호</th><th>영업표지</th><th colspan="3">주 소</th></tr>
<tr><td rowspan="3">대표이사</td><td rowspan="3">안영식/
㈜한스제과</td><td rowspan="3">한스(HANS)</td><td colspan="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5차 비111호</td></tr>
<tr><td>대표자</td><td>대표전화번호</td><td>대표팩스번호</td></tr>
<tr><td>안주태 외2인</td><td>031-463-3505</td><td>031-463-3506</td></tr>
</table>

3. 가맹희망자가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한스(HANS)]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한스(HANS)	
상 호	한스(HANS) oo 점	

상표(서비스표)		등록 40-0949790-0000, 등록 41-0247924-0000
광고 등 그 밖의 상표	CAFÉ PÂTISSERIE HANS Love the moment	등록 41-0290481-0000
	Love the moment HANS	등록 41-0311381-0000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절삭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7,128,187	4,571,840	2,556,346	13,413,469	867,083	916,365
2022년	6,938,099	4,134,834	2,803,265	13,597,445	896,522	846,918
2023년	7,442,069	4,548,179	2,893,890	12,581,495	304,171	290,625

※ 자세한 사항은 별첨4 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안주태	대표이사	2011.2.24~현재	각자대표	회사총괄
	한성훈	대표이사	2010.7.22~현재	각자대표	회사총괄
	안영식	대표이사	2010.7.22~현재	각자대표	회사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	7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한스(HANS)]외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영업표지 사용대가 수수	출원 2011.12.09. 등록 2013.01.21.	출원 40-2011-0069499 등록 40-0949790-0000	(주)한스제과	2033.01.21.
	영업표지 사용대가 수수	출원 2011.12.09. 등록 2012.12.27.	출원 41-2011-0039560 등록 41-0247924-0000	(주)한스제과	2032.12.27.
CAFE PÂTISSERIE HANS Love the moment	영업표지 사용대가 수수	출원 2013.12.23. 등록 2014.06.09.	출원 41-2013-0049438 등록 41-0290481-0000	(주)한스제과	2024.06.09
Love the moment HANS	영업표지 사용대가 수수	출원 2013.12.23. 등록 2015.01.30.	출원 41-2013-0049439 등록 41-0311381-0000	(주)한스제과	2025.01.30.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한스(HANS)]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1년 2월 1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1년 8월 1일)

2. [한스(HANS)]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한스제과	한스 (HANS)	안주태 외2인	2011.2.11 ~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5차 비111호

3. [한스(HANS)]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한스(HANS)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제과제빵	케익, 조각케익, 음료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한스(HANS)]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35	35	-	39	39	-	41	41	-
서울	16	16	-	17	17	-	19	19	-
부산	-	-	-	-	-	-	-	-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1	1	-	3	3	-	3	3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7	17	-	18	18	-	18	18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한스(HANS)]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5	1	1	-	1	35
2022	35	5	1	-	-	39
2023	39	2	-	-	2	41

※ [한스(HANS)]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3을 확인하십시오.

6. [한스(HANS)]외에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한스(HANS)]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한스(HANS]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이하절삭,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41	481,124	12,974	940,186	43,963	29,940	2,994	41개로 산정
서울	19	526,779	12,780	940,186	36,310	217,172	5,058	
부산	-	해당없음	-	-	-	-	-	
대구	1	-	-	-	-	-	-	5개 미만
인천	3	-	-	-	-	-	-	5개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18	478,234	13,084	749,547	43,963	29,940	2,994	
강원	-	해당없음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 3.3㎡ 당 평균매출액
= 전국(해당지역)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전국(해당지역)의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장면적

※ 상기 자료가 한스(HANS)의 전체 연평균매출액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상기의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에 이를 정확한 사실로 인지하여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실제 매장매출액은 점주의 운영능력, 주변환경, 상권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오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열람을 희망하시면 가맹점전체 매출액의 추정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8. [한스(HANS)]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한스(HANS)] 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41	2,712 (약 7년 6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총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한스(HANS)]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분담금을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3]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44,297	*(비공개)*	-	-
광고	*(비공개)*	*(비공개)*	108,952	*(비공개)*	-	-
판촉	*(비공개)*		135,345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기업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기업은행	031-426-2561

※ 별첨1 가맹금 예치제도 설명 참조

귀하는 또한 [기업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

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한스(HANS)]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테리어 외 품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한스(HANS)]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00]				
가맹비	영업비밀 전수비	11,000	계약 체결 시 예치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	오픈 후 소멸	
	영업표지 사용비	11,000			기간 만료 시 소멸	최초 계약에 한함
	교육 및 훈련비	11,000			최초 교육 시 소멸	

※ 귀하의 주거지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일 경우, 교육비와는 별도로 교육기간 동안의 귀하의 숙박 및 식사에 대한 비용은 귀하가 개별적으로 부담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10,000	계약체결 시 예치	계약위반 등에 따른 정산 후 잔액 부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합계	43,000
가맹비	33,000
보증금	10,000

※ 별첨1 가맹금 예치제도 설명 참조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면적 3.3㎡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84,400	9,480				
개설 관련비 (99㎡ 기준)	인테리어 등	169,400	5,647	계약체결후 차등 지급 / 아래 주1) 참조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	착공 시 소멸	99㎡ 기준
	설비 등	100,000	3,333			주문 시 소멸	
	소모품 류 등	5,000	167			주문 시 소멸	
	초도물품	10,000	333			주문 시 소멸	

※ 개설관련비 금액은 당사가 평형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설관련비외에 추가비용(추가 시설 공사 및 인·허가비용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비용은 매장 면적 및 공사 기간,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직접 하실 경우 매장의 면적에 따라 감리비로 평당 374,000원(부가세포함) 인테리어 착공 전 선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소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1) 개설관련비 지급 방법
가. 인테리어 착공 시 인테리어 등의 40% + 설비 등·소모품류 등·초도물품의 100%
나. 인테리어 착공 15일 후 인테리어 등의 30%
다. 인테리어 완공 시 인테리어 등의 30%
※ 개설관련비 금액은 당사가 평형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자율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지역 선정 → 당사 매뉴얼 기준에 부합하는 가맹점 선정 → 설비 및 비품 등 당사의 준수 사항 완비 → 당사의 개점 승인 (계약체결 및 임대 후 100일내 개설)

※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당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당사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청결 및 서비스, 품위를 준수할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한스(HANS)]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의 분납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사	정률제	아래※1 설명 참조	계약 중도해지 시	기간도래 후	
광고 분담금	당사	아래※2 설명 참조	명세서 수령 후 2주내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후	
교육 훈련비	당사	정산 후 고지	교육실시 전	교육 미실시	교육실시 후	재교육시
리모델링 비용	점주 또는 당사 업체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아래※3 참조)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38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당사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1 로열티 정산 방법
- 당월 로열티는 익월 첫 주 목요일에 지급한다.

※2 광고분담금 산정기준
- 가맹점 모집광고일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전액부담
- 브랜드 홍보 및 상품광고일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50% 가맹점사업자가 50%를 각각 부담
- 가맹점 모집광고와 브랜드 홍보 및 상품광고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60%, 가맹점사업자 40%를 부담 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 중 가맹점 총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

※3. 리모델링 시 가맹점사업자가 보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가맹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할 경우 36개월의 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상각잔액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청결 및 위생관리	매장 내 청결 및 위생관리	수시	
품질관리	메뉴의 품질 관리	수시	
서비스 관리	고객응대 및 접객실태 관리	수시	
고객 클레임 관리	클레임 대응 관리	수시	
본사지침이행여부	본사 지침 준수여부 관리	수시	
매출관리	재고관리 및 회계 조사 실시	수시	

※ 영업외 매장상태 및 서비스 등 관리·감독 사항은 Ⅴ-8-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교육훈련비	당사	정산 후 고지	교육실시 전	교육미실시	교육실시 후	재교육시
리모델링 비용	점주 또는 당사 업체 (동명건설)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아래※ 참조)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38페이지** 참조

※. 리모델링 시 가맹점사업자가 보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가맹계약이 종료·해지· 영업

양도할 경우 36개월의 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상각잔액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1)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사항에 대하여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 예정대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조치합니다.
(2) 전항의 승계에 따른 계약조건이 가맹본부와의 계약조건과 동일하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가맹금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업표지, 지식재산권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표지, 지식재산권 등이 만료로 인한 소멸, 변경, 효력 상실을 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에 의한 가맹본부의 대체수단이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새로운 가맹계약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과 절차는 신규계약과 동일한 가맹비, 보증금 등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채권,채무,계약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양수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 중 교육훈련비와 보증금(가맹본부가 양도인에게 반환 시) 등을 부담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0-31]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 당사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사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부착물을 가맹점사업자의 본인의 비용으로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한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한스(HANS)]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원, 부가세 별도)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한스(HANS)]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한스(HANS)]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한스(HANS)]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케익류	생크림케익(대)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생크림케익(소)			
	로얄쇼콜라(대)			
	로얄쇼콜라(소)			
	가나슈케익(대)			
	가나슈케익(소)			
	사각가나슈(대)			
	사각가나슈(소)			
	초코딸기생크림(대)			
	초코딸기생크림(소)			
	망고생크림(대)			
	망고생크림(소)			
	당근케익(소)			
	라이트(대)			
	라이트(소)			
	산딸기무스(대)			

	산딸기무스(소)			
	레몬치즈(대)			
	레몬치즈(소)			
	고구마(대)			
	고구마(소)			
	레아(대)			
	레아(소)			
	트리플쇼콜라			
	초코티라미수(대)			
	초코티라미수(소)			
	티라미수(대)			
	티라미수(소)			
	치즈수플레(대)			
	치즈수플레(소)			
	뉴욕치즈			
	살구타르트			
	호두타르트			
	치즈타르트			
	딸기타르트			
선물류	프리미엄롤(딸기)			
	프리미엄롤(망고)			
	프리미엄롤(생크림)			
	롤(녹차)			
	롤(치즈)			
	롤(초코)			
	파운드(레몬/오렌지)			
	슈(바닐라/초코)			
	브라우니 1박스(50ea)			
	브라우니(1ea)			

선물류	A쿠키(호두/슬아/초코)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봉지쿠키(디아망/초코디아망)			
	갸또쇼콜라			
	미니치즈타르트			
	아몬드쇼콜라			
	트리플쇼콜라			
	자몽젤리			
	마카롱			
	휘낭시에			
	다쿠아즈			
	브라우니주니어			
	벨지움			
	누아스틴			
	아몬딘			
스페셜케익	No.1 블루베리			
	No.1 고구마,가나슈			
	No.2 블루베리			
	No.2 고구마,가나슈			
	No.3 티라미수			
	No.3 쵸코티라미수			
	No.4 로얄쇼콜라			
	No.5 가나슈(XL)			
	No.5 고구마,블루(XL)			
	No.6 2단 상단S/하단L/다리X			
	No.7 2단 블,요,가,고(L) /가(XL)			
	No.7 블,요,가,고(L)/블,고(XL)			
	No.8 2단 상단S/하단L/다리X			
	No.9 블,요,가,고(L)/가(XL)			
	No.9 블,요,가,고(L)/블,고(XL)			
	No.10 2단 상단S/하단L/다리O			
	No.11 블,요,가,고(L)/가(XL)			
	No.11 블,요,가,고(L)/블,고(XL)			
	No.12 2단 상단S/하단L/다리O			
	No.13 블,요,가,고(L)/가(XL)			
	No.13 블,요,가,고(L)/블,고(XL)			
	No.14 3단 가나슈(XL)			
	No.14 3단 블,고(XL)			
	No.15 사각특대(망고쵸콜릿)			
	No.16 사각특대(산딸기)			
케이크 (냉동 반제품)	생크림(대)냉동			
	생크림(소)냉동			
	가나슈(대)냉동			
	가나슈(소)냉동			
	사각가나슈(대)냉동			
	사각가나슈(소)냉동			
	레아(대)냉동			
	레아(소)냉동			

케이크 (미니)	딸기타르트(미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가나슈케익(미니)			
	고구마(미니)			
	라이트(미니)			
	로얄쇼콜라(미니)			
	발로나초코생크림(미니)			
	망고타르트(미니)			
	청포도타르트(미니)			
	산딸기블루베리타르트(미니)			
	당근케익(미니)			
케이크 (피스)	생크림케익			
	가나슈케익			
	사각산딸기가나슈			
	로얄쇼콜라			
	망고생크림			
	초코딸기생크림(12P)			
	초코딸기생크림(10P)			
	티라미수			
	초코티라미수			
	라이트			
	레아			
	산딸기무스			
	고구마			
	레몬치즈			
	치즈수플레			
	당근케익			
	뉴욕치즈			
	치즈타르트			
	딸기타르트			
	살구타르트			
	호두타르트			
	쁘띠 체리 치즈타르트			
	쁘띠 청포도 치즈타르트			
	쁘띠 망고 치즈타르트			
	쁘띠 블루베리 치즈타르트			
	쁘띠 파인애플 치즈타르트			
	쁘띠 자몽 치즈타르트			
	프리미엄롤(딸기/망고)			
	프리미엄롤(생크림)			
	파운드(레몬/오렌지)			
	롤(녹차)			
	롤(치즈/초코)			
Hot커피	카라멜마끼아또			
	아메리카노/카페라떼			
	에스프레소/카푸치노			
	카페모카/바닐라라떼			
	카페비엔나			

Ice커피	아메리카노/카푸치노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카페라떼/카페모카			
	바닐라라떼/카페비엔나			
	카라멜마끼아토			
	아포카토			
tea&classic	밀크티/녹차			
	페퍼민트/캐모마일			
	얼그레이/Ice녹차			
	녹차라떼/Ice녹차라떼			
	Ice얼그레이/Ice페퍼민트			
	블루베리/Ice블루베리			
	Ice캐모마일/마테			
	Ice마테			
생과일	생과일/딸기라떼			
주스	오렌지/사과			
Hot드링크	우유/핫초코			
	카라멜라떼/한스다크초코			
Ice드링크	레몬에이드/Ice카라멜라떼			
	아이스초코/생자몽젤			
	생레몬에이드/생자몽에이드			
	생블루베리에이드			
셋트	셋트 A/셋트 B			
빙수&아이스크림	빙수(커피/녹차/블루베리/팥)			
	바나나쉐이크/아이스크림			
	프라페/빙수(테이크아웃)			
세트메뉴	HOT 세트			
	ICED 세트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단한 사유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 및 전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변경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상대방	상품 또는 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영업지역 외 소비자	모든 상품	배달판매, 통신판매	1회 위반 : 서면 경고 2회 위반 :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경쟁사	모든 상품 또는 물품	외부로 반출 금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지역별로 지역상권에 맞추어 예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소비자가	가격통보방법	비고
케익류	생크림케익(대)	42,000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하여 홈페이지 또는 POS를 통해 공지	
	생크림케익(소)	33,000		
	로얄쇼콜라(대)	48,000		
	로얄쇼콜라(소)	35,000		
	가나슈케익(대)	46,000		
	가나슈케익(소)	33,000		
	사각가나슈(대)	42,000		
	사각가나슈(소)	31,000		
	초코딸기생크림(대)	50,000		
	초코딸기생크림(소)	39,000		
	망고생크림(대)	48,000		
	망고생크림(소)	37,000		
	당근케익(소)	39,000		
	라이트(대)	46,000		
	라이트(소)	33,000		
	산딸기무스(대)	44,000		
	산딸기무스(소)	31,000		
	레몬치즈(대)	48,000		
	레몬치즈(소)	37,000		
	고구마(대)	44,000		
	고구마(소)	33,000		
	레아(대)	44,000		
	레아(소)	31,000		
	트리플쇼콜라	24,000		
	초코티라미수(대)	44,000		
	초코티라미수(소)	33,000		
	티라미수(대)	44,000		
	티라미수(소)	33,000		
	치즈수플레(대)	42,000		
	치즈수플레(소)	31,000		
	뉴욕치즈	39,000		
	살구타르트	35,000		
	호두타르트	35,000		
	치즈타르트	39,000		
	딸기타르트	52,000		

선물류	A쿠키(호두/슬아/초코)	1,700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하여 홈페이지 또는 POS를 통해 공지	
	봉지쿠키(디아망/초코디아망)	5,500		
	갸또쇼콜라	2,800		
	미니치즈타르트	2,800		
	아몬드쇼콜라	18,000		
	트리플쇼콜라	6,000		
	자몽젤리	6,500		
	마카롱	2,000		
	휘낭시에	2,600		
	다쿠아즈	2,700		
	브라우니주니어	2,800		
	벨지움	13,000		
	누아스틴	16,000		
	아몬딘	16,000		
스페셜케익	No.1 블루베리	46,000		
	No.1 고구마,가나슈	48,000		
	No.2 블루베리	48,000		
	No.2 고구마,가나슈	50,000		
	No.3 티라미수	46,000		
	No.3 쵸코티라미수	48,000		
	No.4 로얄쇼콜라	48,000		
	No.5 가나슈(XL)	103,000		
	No.5 고구마,블루(XL)	126,000		
	No.6 2단 상단S/하단L/다리X	92,000		
	No.7 2단 블,요,가,고(L) /가(XL)	161,000		
	No.7 블,요,가,고(L)/블,고(XL)	184,000		
	No.8 2단 상단S/하단L/다리X	92,000		
	No.9 블,요,가,고(L)/가(XL)	161,000		
	No.9 블,요,가,고(L)/블,고(XL)	184,000		
	No.10 2단 상단S/하단L/다리O	103,000		
	No.11 블,요,가,고(L)/가(XL)	172,000		
	No.11 블,요,가,고(L)/블,고(XL)	195,000		
	No.12 2단 상단S/하단L/다리O	103,000		
	No.13 블,요,가,고(L)/가(XL)	172,000		
	No.13 블,요,가,고(L)/블,고(XL)	195,000		
	No.14 3단 가나슈(XL)	230,000		
	No.14 3단 블,고(XL)	253,000		
	No.15 사각특대(망고쵸콜릿)	126,000		
	No.16 사각특대(산딸기)	120,000		
케이크 (냉동 반제품)	생크림(대)냉동	가격 협의		
	생크림(소)냉동			
	가나슈(대)냉동			
	가나슈(소)냉동			
	사각가나슈(대)냉동			
	사각가나슈(소)냉동			
	레아(대)냉동			
	레아(소)냉동			

케이크 (미니)	딸기타르트(미니)	28,000		
	가나슈케익(미니)	22,000		
	고구마(미니)	22,000		
	라이트(미니)	22,000		
	로얄쇼콜라(미니)	23,000		
	발로나초코생크림(미니)	22,000		
	망고타르트(미니)	32,000		
	청포도타르트(미니)	28,000		
	산딸기블루베리타르트(미니)	23,000		
	당근케익(미니)	22,000		
케이크 (피스)	생크림케익	5,500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하여 홈페이지 또는 POS를 통해 공지	
	가나슈케익	5,500		
	사각산딸기가나슈	5,100		
	로얄쇼콜라	5,500		
	망고생크림	5,900		
	초코딸기생크림(12P)	5,900		
	초코딸기생크림(10P)	6,500		
	티라미수	5,500		
	초코티라미수	5,500		
	라이트	5,700		
	레아	5,500		
	산딸기무스	5,500		
	고구마	5,500		
	레몬치즈	5,900		
	치즈수플레	5,300		
	당근케익	5,300		
	뉴욕치즈	5,700		
	치즈타르트	5,700		
	딸기타르트	6,500		
	살구타르트	5,300		
	호두타르트	5,300		
	쁘띠 체리 치즈타르트	7,900		
	쁘띠 청포도 치즈타르트	7,900		
	쁘띠 망고 치즈타르트	7,900		
	쁘띠 블루베리 치즈타르트	7,900		
	쁘띠 파인애플 치즈타르트	7,900		
	쁘띠 자몽 치즈타르트	7,900		
	프리미엄롤(딸기/망고)	4,500		
	프리미엄롤(생크림)	4,300		
	파운드(레몬/오렌지)	2,600		
	롤(녹차)	4,300		
	롤(치즈/초코)	4,100		
선물류	프리미엄롤(딸기)	21,000		
	프리미엄롤(망고)	21,000		
	프리미엄롤(생크림)	20,000		
	롤(녹차)	20,000		
	롤(치즈)	19,000		

선물류	롤(초코)	19,000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하여 홈페이지 또는 POS를 통해 공지	
	파운드(레몬/오렌지)	18,000		
	슈(바닐라/초코)	1,200		
	브라우니 1박스(50ea)	195,000		
	브라우니(1ea)	3,900		
생과일 음료	생과일/딸기라떼	6,000/6,500		
Hot커피	카라멜마끼아또	5,000		
	아메리카노/카페라떼	4,000/4,500		
	에스프레소/카푸치노	4,000/4,500		
	카페모카/바닐라라떼	5,000/5,000		
	카페비엔나	5,000		
Ice커피	아메리카노/카푸치노	4,500/5,000		
	카페라떼/카페모카	5,000/5,500		
	바닐라라떼/카페비엔나	5,500/5,500		
	카라멜마끼아토	5,500		
	아포카토	6,500		
tea&classic	밀크티/녹차	6,000/4,500		
	페퍼민트/캐모마일	4,500/4,500		
	얼그레이/Ice녹차	4,500/5,000		
	녹차라떼/Ice녹차라떼	4,500/5,000		
	Ice얼그레이/Ice페퍼민트	5,000/5,000		
	블루베리/Ice블루베리	4,500/5,000		
	Ice캐모마일/마테	5,000/4,500		
	Ice마테	5,000		
주스	오렌지/사과	4,500/4,500		
Hot드링크	우유/핫초코	3,500/5,500		
	카라멜라떼/한스다크초코	4,500/5,500		
Ice드링크	레몬에이드/Ice카라멜라떼	5,500/5,000		
	아이스초코/생자몽젤	6,000/6,500		
	생레몬에이드/생자몽에이드	5,500/5,500		
	생블루베리에이드	5,500		
셋트	셋트 A/셋트 B	7,500/8,000		
빙수&아이스크림	빙수(커피/녹차/블루베리/팥)	9,000		
	바나나쉐이크/아이스크림	5,500/3,500		
	프라페/빙수(테이크아웃)	6,000/8,000		
세트메뉴	HOT 세트	8,500/9,000		
	ICED 세트	9,000/9,500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케익, 타르트, 쿠키, 머핀 등의 제과 및 제빵과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업	한스(HANS)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반경 500M	가맹계약서에 별첨으로 영업지역 표시

[당사는 상기의 표와 같이 영업지역의 설정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매장에 대한 영업지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후 계약서에 별첨을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구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구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다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한스(HANS)'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한스(HANS)]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일반소매	카페지제이	딸기 타르트 외 104	완제품 및 부자재 판매
일반소매	한스앤빈커피	딸기 타르트 외 19	완제품 및 부자재 판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9.82	0.18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한스(HANS)]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가맹계약이 갱신된 경우 [1]년씩 갱신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부담하는 교육비용이 같은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당사의 해지권)	관련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6개월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3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가맹본부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4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100일 이내에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당사의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가맹사업자가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3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	

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가맹점사업자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가맹본부가 약정한 물품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33조 제3항
가맹본부가 본 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계약의 조항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기타 가맹본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본 건 가맹사업 전체에 명예와 신용이 현저히 훼손되어 가맹점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 60일전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합의에 의한 해지

상호간 계약 해지 사유 (상호간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사망 또는 재해로 인한 장애판정을 받아 가맹점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34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이민을 가거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지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유로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을 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가맹계약의 목적이 된 가맹점의 점포 건물 자체가 공용수용 등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수정에 관하여 합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지역 변경에 합리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가맹계약 갱신 시(180일~90일사이에 계약 변경 조건 통지)	관련 조문 없음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만 가맹점운영권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	가맹점사업자가 30일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통지 후 1개월 이내에)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새로운 가맹계약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과 절차는 신규계약과 동일한 가맹비, 보증금 등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채권,채무,계약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양수도)를 모두 승계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 중 교육훈련비와 보증금(양도인이 반환받은 경우)등을 부담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및 위탁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야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

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맹점운영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 통지 → 본부의 승인 → 모든 권리·의무 이전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영업의 상속 및 증여에 의한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영업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경우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배우자 또는 존·비속에 대하여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케익, 타르트, 쿠키, 머핀 등의 제과 및 제빵과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업종	경업 불허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 없음	5일 이상 연속 휴업 금지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에 통지

※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경우, 즉시 가맹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

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해당사항 없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청결 및 위생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장의 청결 및 위생 상태 검사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당사의 슈퍼바이져 및 가맹점관리 담당자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원자재, 부자재조사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서비스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장방문 고객서비스 및 응대조사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고객 클레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고객클레임 장부조사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본사지침이행여부	담당자 매장 방문 → 본사지침 이행체크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매출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출 및 재고 관리 현황 조사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한스(HANS)]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브랜드	50%	50%	광고비 분담금은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청구하고, 2주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상품·브랜드+ 가맹점사업자모집	60%	40%		
	가맹점사업자모집	100%	-		

판촉 행사	지역 내 판촉행사	기획비용 부담	제작비용 부담	판촉행사비는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	개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을 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가맹계약서 전문1과 가맹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한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참고할 것)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가맹계약서 제37조(가맹계약서 참조)에 의해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100%, 70%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급부의 이행지체 시 위약벌로 이행지체일로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지체일당 금이십만원(₩200,000)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도 가맹본부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경우 당사는 보증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가맹본부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제3항의 대금결제를 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마. 가맹점사업자가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바.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사.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아. 가맹점사업자가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서를 받은 날까지 영업표지의 사용을 철거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래의 경우 당사는 보증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가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100일 이내에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합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9]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9일 내외	-
가맹희망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없음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즉시	없음
입지 선정	- 입지의 적격 여부 검토	4일	없음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후	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계약서 교부 익일 이후	예치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계약 체결 시	43,0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없음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정보공개서 9페이지 참조 (절차는 주1참조)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45일	정보공개서 9페이지 참조 (절차는 주1참조)
교육 실시	- 공사 기간 중 점포운영교육 실시	7일	인테리어 기간 중 실시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직영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설관련비의 산출은 바닥면적 99㎡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같은 평수라도 점포의 형태, 노후 정도, 구조 등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 개설관련비외에 추가비용(추가 시설 공사 및 인·허가비용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비용은 매장 면적 및 공사 기간,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직접 하실 경우 매장의 면적에 따라 감리비로 3.3㎡ 275,000원(부가세포함) 인테리어 착공 전 선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소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

다.
주1) 개설관련비 지급 방법
가. 인테리어 착공 시 인테리어 등의 40% + 설비 등·소모품류 등·초도물품의 100%
나. 인테리어 착공 15일 후 인테리어 등의 30%
다. 인테리어 완공 시 인테리어 등의 30%
※ 예치가맹금의 범위 및 절차는 별첨1 예치가맹금제도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이하 '리모델링'이라 함)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리모델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ㅇ 기타 관련 절차는 가맹사업법령(가맹사업법 제13조의 2 제6항)에 따름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경영지도	가. 상품 판매소구점을 창출하는 방법과 신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한 경영지도 나. 해당 지역의 점포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전략 및 전술지도 다.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라. 판촉활동에 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또는 인력파견 통지(경영지도내용, 기간, 인력파견 현황,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결과 제시 또는 인력 파견 결정	가맹본부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또는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가맹본부의 필요 시 또는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1) 당사는 노후화의 객관적 기준을 최초설치일로부터 5년 내외로 간주합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한스(HANS)] 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 시 교육	이론교육 2일 실습교육 5일	강의 실습교육	오픈 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정기 교육	마케팅, 세무관리, 신메뉴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연1회	필요 시 당사에서 통지
특별 교육	CS, 신메뉴, 매장관리 등	실습교육	필요에 따라	필요 시 당사에서 통지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오픈이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한스(HANS)]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업 시 교육	7일(60시간 이상)	가맹비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 교육	4시간	당사 부담	
특별 교육	4시간	당사 부담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및 보수 교육에 불참할 경우 가맹점 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 고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별첨 1. 가맹금 예치제도 설명
별첨 2. 가맹사업을 보호하고 영업표지의 동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소모품 류 및 물품 등
별첨 3. 2023년 가맹점리스트
별첨 4.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 5. 교육·훈련 커리큘럼
별첨 6. 매장 체크리스트

별지 1.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별지 2. 주요품목별 직전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31-463-350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금 예치제도 설명]

1.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가맹금예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분은 아래의 가맹금을 2호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당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가맹비	보증금	합계
금액	33,000	10,000	43,000

2. 가맹금 예치 기관 및 계좌 내역

가. 예치기관 : 기업은행

나. 예치 계좌 내역

구 분	내 역	비 고
상 호	(주)한스제과	
명 칭	한스(HANS)	
금융기관명	기업은행	
지점소재지	안양 평촌테크노	
금융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031-426-2561	
예치계약 체결일	2012.10.24	

별첨2 [가맹사업을 보호하고 영업표지의 동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소모품 류 및 물품 등]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3 [2023년 가맹점리스트]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4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현황 전체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5 [교육·훈련 커리큘럼]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6 [매장 체크리스트]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수령 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 로부터 아래의 각 사항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202 년 월 일 가맹본부의 사무실(실제교부장소)에서 서면(교부방법 기재)으로 교부받아 정보공개서 전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한스(HANS)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2) 한스(HANS) 정보공개서 목차

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바.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아. 교육·훈련프로그램

본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 또는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질 것을 서약합니다.

2. 정보 공개서의 수령 방법

① 직접 문서로 전달 □ ②정보 통신망 □ ③전자 우편 □ ④자기디스크 □

3. 본인은 가맹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다.

① 그렇다 □ ②그렇지 않다 □

20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 명 : 사인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인근가맹점 현황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주)한스제과 대표이사　　(인)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5차 비111호
브랜드명 : 한스(HANS)
연 락 처 : 031-463-3505

1. 본인은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리스트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수령여부	
		수령날짜	확인
점포예정지 확정 시	정보공개서와 동시수령		
점포예정지 미확정시	점포 확정 후 정보공개서와 별도로 추후 수령		

2. 인근 가맹점 현황

No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20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 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2. 주요 품목별 직전사업연도 상위 50%의 공급가격 상·하한

(단위:원, 부가세 별도)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